의안번호	제	<u>ই</u>
의결연월일	2019. (제	· · · 회)

결   사   하	의 결 사 항	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

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19. 10. 7.

#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번호 제 호

제출연월일: 2019. 10. 7.

제 출 자:고성군수

### 가. 제안이유

○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(2019. 1. 1.~2019. 12. 31.) 만료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장사시설의 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# 나. 위탁근거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1조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
- 「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3(심의회의 업무)
- 「고성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민간위탁업무의 처리 규정」

### 다. 주요내용

○ 시설개요

· 고성군공설화장장

(기준: 2019. 9.현재)

시설명	소재지	설치년도	규모 (m²)	화장로수	화장능력	방식	비고
고성군 공설화장장	상리면 장치로 220-163	1985.10.	102	2	6구/일	무연무취 (등유)	

· 고성군공설봉안당

(기준: 2019. 9.현재)

시설명	소재지	설치년도	규모 (m²)	봉안능력 (기)	봉인기수	잔여	비고
고성군 공설봉안당	상리면 장치로 220-163	1991.12	482.19	4,206	3,529	677	

#### · 장기공설공원묘지

규모 매장능력 매장기수 시설명 소재지 설치년도 잔여 비고  $(m^2)$ (7]동해면 장기리 장기공설 2002.1 7.381 382 258 124 공원묘지 산209-2번지

· 장기공설봉안묘

시설명	소재지	설치년도	규모 (m²)	봉안능력 (기)	봉안기수	잔여	비고
장기공설 봉안묘	동해면 장기리 산209-2번지	2002.1	_	210	27	183	

(기준: 2019. 9.현재)

(기준: 2019. 9.현재)

#### ○ 현위탁자 현황

소재지	시설명	위탁처	비고
상리면 장치로	고성군 공설화장장 및	(유)자은리영생장의사	화장장 및 봉안당 소재
220-163	봉안당	(대표:정대환)	자은마을 설립 유한회사
동해면 장기리	장기공설공원묘지 및	정동연	지역주민
산209-2	봉안묘	(개인)	시약구인

#### ○ 위탁개요

· 위탁 운영기간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) ※ 기 위탁내역: 2019. 1. 1. ~ 2019. 12. 31.(1년)

· 위탁내용: 장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

### 라. 기대효과

○ 시설운영의 특성상 사체와 유골 처리 업무로 일반 개인, 보통 인부가 수행하기 어려워 장사관련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기술성, 전문성 등 확보

### 마. 향후 추진계획

○ 2019. 11월: 위탁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 접수

○ 2019. 11월: 사업계획서 등 검토, 심의

○ 2019. 12월: 재위탁 계약 및 위탁 계약증서 발급

#### 바. 참고사항

○ 고성군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계획: 붙임 1

○ 관계 법령 : 붙임 2

# 별임1)

#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계획

-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·운영기간(2019. 1. 1.~ 2019. 12. 31.)만료와 관련됨.
- O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에 대한 재위탁 방식으로 관련 제반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.

### Ⅰ. 관련근거

-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O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O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
-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3(심의회의 업무)
- O 고성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민간위탁업무의 처리 규정

## Ⅱ. 장사시설 현황

### □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현황

O 고성군공설화장장

시설명	소재지	설치년도	규모 (m²)	화장로수	화장능력	방식	비고
고성군 공설화장장	상리면 장치로 220-163	1985.10.	102	2	6구/일	무연무취 (등유)	

(기준: 2019. 9.현재)

O 고성군공설봉안당 (기준: 2019. 9.현재)

시설명	소재지	설치년도	규모 (m²)	봉안능력 (기)	봉인기수	잔여	비고
고성군 공설봉안당	상리면 장치로 220-163	1991.12	482.19	4,206	3,529	677	

○ 장기공설공원묘지 (기준: 2019. 9.현재)

시설명	소재지	설치년도	규모 (m²)	매장능력 (기)	매장기수	잔여	비 <u>고</u>
장기공설 공원묘지	동해면 장기리 산209-2번지	2002.1.	7,381	382	258	124	

#### O 장기공설봉안묘

시설명	소재지	설치년도	규모 (m²)	봉안능력 (기)	봉안기수	잔여	비고
장기공설 봉안묘	동해면 장기리 산209-2번지	2002.1	-	210	27	183	

(기준: 2019. 9.현재)

(단위: 천원, 연간)

#### □ 현 위탁체(자) 현황

소재지	시설명	위탁처	비 <u>고</u>
상리면 장치로	고성군 공설화장장 및	(유)자은리영생장의사	화장장 및 봉안당 소재
220-163	봉안당	(대표:정대환)	자은마을 설립 유한회사
동해면 장기리	장기공설공원묘지 및	정동연	지역주민
산209-2	봉안묘	(개인)	

### Ⅲ. 위탁추진 계획

□ 위탁 대상시설 및 소요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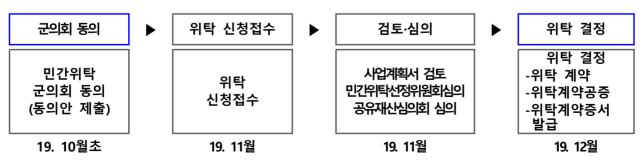
시설명	소재지	소요예산 (군비)	비고
합계		91,600	
고성군 공설화장장 및 봉안당	상리면 장치로 220-163	88,000	
장기공설공원묘지 및 봉안묘	동해면 장기리 산209-2	3,600	

□ 위탁기간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간)

□ 위탁방법: 민간위탁선정위원회,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한 선정

□ 위탁내용: 장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

# **Ⅳ. 행정사항**

- 2019. 10.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 추진 계획 수립, 민간위탁동의안 군의회 제출
- O 2019. 11.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, 심의
- O 2019. 12. 위·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
- O 2020. 1. 위탁운영 시행

#### 별임2)

# 관 계 법 령

#### 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####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9.>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#### 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#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, 사망자수,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고시로 정한다. <개정 2010. 3. 15.>
-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계 획에 해당 장사시설(葬事施設)의 설치·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: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 · 조성
  - 2.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: 화장시설 설치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·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# □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

- ① 군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·단체·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
-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 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####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- 1.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- 2.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-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-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, 도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 - 1.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
  - 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, 검침, 주차시설,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
  -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

안건의 예에 따르고,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.

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#### □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#### 제4조의3(심의회의 업무)

-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공유재산의 취득 · 처분에 관한 사항
  - 2.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
  - 3.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
  - 4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
  - 5.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
  - 6.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  - 1.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차분
  - 2. 「건축법」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
  - 3.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
- 4.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
- 5. 「<u>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</u>」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
- 6.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[본조신설 2015.10.28.]

# 고성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시설 민간위탁업무의 처리 규정

#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고성군 화장장 및 납골당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의 운영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위탁대상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규정 등 준수)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함은 물론 시설관리 관계 협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별지 위·수탁협약서에 따라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위탁대	상시설의 표 	·시) 위틱 	대상시설은 대	가음과 같다. 	
 시설	설명 :	건물연면적 	주. 	요시설 	
화장장	102m²(⊼	]상1층)	화장로 2기.	휴게실 40n	$ m n^2$
 납골당	482.19	m²(지상2층)		봉안능력	3.5907]

**제4조(위탁대상업무의 내용)**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관리를 위하여 위탁 대 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1. 시설운영관리 및 유지보수
- 2. 시설관리감독
- 3. 기타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5조(관리복장)** 근무자는 근무에 편리하고 안전수칙에 맞는 복장 및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긴급시의 조치)** ①수탁자는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책임하에 소정 의 인원을 배치하여 즉시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제7조(응급처치 및 사고보고) ①수탁자는 수탁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취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, 경과,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위탁자및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대처할 경우에는 2차 재해, 재난을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근무자의 업무시간 및 배치) 시설은 이용자가 언제라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므로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.

제9조(업무관리 및 안전교육) ①수탁자는 본 업무가 공공적으로 중대함을 명심하여 노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②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리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사무실 등의 사용)** ①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은 협약기간 중 무상으로 사용하되 사용상 파손, 오손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.

②사무실 등의 사용에 따른 인수받은 물품 외의 물품구입비, 수선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.

제11조(자재 및 경비의 부담구분)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경비의 부담구분은 위·수탁협약서 제5조에 의하며, 수탁자는 무상대여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사무기기 등의 사용) ①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인계 받은 기구, 공 구, 사무기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되, 보관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, 도 난, 분실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, 사용이 불가한 물품 등 재산을 폐기처분 할 경우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그 매각대금은 위탁자에게 불입한다.

#### 제2장 서류 및 장부

제13조(제출서류) 수탁자는 수탁협약체결후 즉시 다음 서류를 위탁자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. 제2호, 제3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.

- 1. 업무착수계
- 2. 운영책임자 및 분야별 현장요원 선임계
- 3.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도

제14조(일보 및 업무예정표)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일보 및 업무예정표 를 비치하여야 한다.

- 1. 업무예정표(연간, 월간)
- 2. 운영, 관리일보
- 3.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
- ②매월 위탁업무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.
- 1. 운영, 관리상항
- 2. 이용자현황 및 유지관리 지표
- 3.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

#### 제3장 작 업 요 령

**제15조(업무처리방법)** ①수탁자는 시설이 고성군민의 공공시설임을 명심하여 공공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시설의 용도, 기능을 충분히 이해

하여 운영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. 특히, 장기간에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그 운영관리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각종 시설의 운영 관리조작은 제원 및 기기 취급설명서,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
④고장 등으로 시설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기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재개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점검정비) 수탁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로 각종시설 및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 및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손상, 누수, 부식, 작동상황 등의 확인 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해야 한다.

- 1. 일상점검은 수시로 행하되, 예방을 목적으로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점검을 주로 하며, 이상 징후의 조기발견 및 그 상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보고하여야 한다.
- 2. 정기점검은 3개월, 6개월, 1년 단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시설장비의 교정, 조정, 소모품의 교환, 보충, 청소등 각 시설 및 기기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수리 및 개조) 수탁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위탁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8조(유자격자에 의한 작업) 수탁자는 전기공작물, 위험물, 보일러 등의 취급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.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, 통보,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(경비 및 도난) 수탁자는 시설, 설비, 기기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범, 방화 등 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하며, 도난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수탁자의 부주의로 도난 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4장 수탁업무의 인계 등

제20조(예비조사 및 시험운영) ①수탁자는 협약후 인계, 인수 전까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, 시설운영 전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 수 후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 근무원에게 수탁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교 육훈련을 실시, 숙련화 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.
- ③인계, 인수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

#### 제5장 기 타

제21조(운영세칙) ①위탁자는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. ②수탁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도 운전조작상 당연히 필요한 업무에대하여는 양식 있는 판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.

제22조(다른 의견의 해석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와 해석 또는 사무수행에 있어서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. 끝.